

강릉시의회 공고 제2023-42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릉시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30일

강릉시 의회의장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을 위한 업종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등 지원 내용의 세부사항을 보완하여 위생업소 지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업소의 정의 신설 및 정비(안 제2조)

나.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8조~1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릉시의회의장(참조: 의회 사무국 행정전문위원/☎033-640-4033)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의견

[보내실 곳]

- 우 편: (25522)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홍제동) 강릉시의회 의회사무국
- 이메일: jhyoon93@korea.kr
- 팩 스: 033-640-4070

- 붙임 1.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 1]

강릉시 조례 제 호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휴게음식점영업 및 「공중위생 관리법」 제2조”를 “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증업소”란”을 ““지정업소”란”으로, “우수·모범업소·위생등급제”를 “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생관리 등급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 황색등급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위생업소 및”을 “위생업소·지정업소·위생관리 등급업소 및”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선진외식문화”를 “선진문화”로 한다.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제6조 중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의 제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공정”을 “시장은 공정”으로 하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위생업소”를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9조) 중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하며,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의 제목“(시행규칙)”을“(위원의 임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생업소 환경개선 사업 계획서

1. 업소명(대표자, 연락처) : 00식당(000, 000-1234-5678)
 2. 사업기간 : 0000. 00. 00. ~ 00. 00.
 3. 총사업비 : 원(보조금액 : 원)※80%보조, 20% 자부담
 4. 세부계획 ※ 부가세 포함하여 작성
- 비대면관리시스템 + 환경개선 비대면관리시스템 설치(기 환경개선 업소)

사업내용 (시설 개·보수 계획)	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 사업내용의 산출내역은 견적서(부가세포함)를 근거로 정확히 작성함(견적서 첨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과 <u>휴게음식점영업</u> 및 「<u>공중위생 관리법</u>」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p> <p>2. “<u>인증업소</u>”란 식품위생법령에 따른 <u>우수·모범업소·위생등급제 지정업소</u>와 <u>친절서비스 향상</u>을 위하여 강릉시에서 선정한 <u>친절음식점</u>을 말한다.</p> <p><u><신 설></u></p> <p>3. (생 략)</p> <p>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에</p>	<p>제2조(정의) ----- -----.</p> <p>1. ----- ----- ----- <u>휴게음식점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u> 및 「<u>공중위생관리법</u>」 제2조----- -----.</p> <p>2. “<u>지정업소</u>”란 ----- ----- <u>우수업소·모범업소·위생등급</u> ----- ----- ----- -----.</p> <p>3. “<u>위생관리 등급업소</u>”란 「<u>공중위생관리법</u>」 제13조에 따라 실시한 <u>위생서비스평가</u>에서 <u>녹색, 황색등급</u>을 받은 업소를 말한다.</p> <p>4. (현행 제3호와 같음)</p> <p>제3조(지원대상) ----- ----- -----</p>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

1. 위생업소 및 위생업소 단체

2. (생략)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사업

2. 인증업소 및 각종 위생정책 참여업소에 대한 위생용품 등 지원

3. (생략)

4. 친절·위생·음식문화 향상을 위한 선진외식문화 체험·탐방·견학

5. (생략)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시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1. 위생업소·지정업소·위생관리 등급업소 및 -----

2.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사업) -----

-----.

1. -----
필요한 -----

2. 위생수준 향상과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사업

3. (현행과 같음)

4. -----
----- 선진문화 -----

5. (현행과 같음)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

-- 위생업소지원심의위원회 --

--.

제8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강릉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2. (생략)

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하여는 「강릉시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강릉시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① 시장은 공정-----
-----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② -----
-----.

1.·2. (현행과 같음)

3. ----- 안전한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위생업소 -----

<삭제>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릉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1. 강릉시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준용) -----
-----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강릉시 위생업소 등 관련 단체의 협의회장

2. 위생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다.

<신 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
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신 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
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할 수 있다.

1.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이
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법규명: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제·개정안 내용	의 건	비 고